

# 8-9세기 황해 해상 무역의 배경

孫光圻\* · 王杰\* · 李寶民\*

Background of Maritime Trade of Yellow Sea in 8-9th Century

Sun, Guang-Qi · Wang, Jie · Li, Bao-Min

〈목 차〉

- |                            |                      |
|----------------------------|----------------------|
| 1. 隋唐의 중국 재통일-봉건 중앙집권제의 성숙 | 3. 당나라의 무역 概況        |
| 2. 당나라의 내륙운송체계 概況          | 4. 당나라의 해외 교류에 대한 태도 |

## 一. 당나라의 배경

### 1. 隋唐의 중국 재통일-봉건 중앙집권제의 성숙

#### 1) 隋唐의 政體 概況

政體는 국가 정권의 조직 형태로서 특정한 사회의 지배계급이 어떠한 원칙과 방식에 의해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자기를 보호하며 사회를 다스리는 政治機關을 말한다.

수나라는 정권을 세운 후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들을 취하였다.

(1) 三省의 설치: 三省이란 바로 尙書, 門下, 內史<sup>1)</sup>등을 말한다. 內史省은 의결(決策)기관인데 장관을 內史令이라고 하였고, 門下省은 감독(審議)기관으로서 장관을 納言이라 하였으며, 尙書省은 집행기관으로서 전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였는데 장관을 尙書令이라고 하였다. 세 省의 장관은 秦漢시기의 재상에 해당되는바 재상의 직무를 세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權臣의 專權을 방지하고 황제가 직접 통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앙집권이 진일보 강화된 징표이다.

\* 中國 大連海事大學 教授

이 論文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隋書』卷28 『百官志下』

(2) 지방 행정기구의 감축: 수나라는 南北朝시기의 州, 郡, 縣 3급 행정제도를 폐지하고 “중요한 것은 보존하고 閑職은 폐지하며 작은 곳을 병합하여 큰 것으로 바꾼다”(存要去閑, 并小爲大)는 원칙 하에 州, 縣 2급 행정제도를 실시함으로써 政令(정책)의 집행을 개선하였다.

(3) 지방 官吏에 대한 통제 강화: 583년, 수나라에서는 9품 이상의 지방 관리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任免하였으며 매년 吏部에서 優劣를 감찰하였다. 그 후에는 또 州縣의 正職은 매 3년마다 교류하였고 副職은 4년마다 교환하였으며 再任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2)</sup>

(4) 科擧制度의 시행: 수나라는 魏晉이래 名門의 지위를 수호하는 9품 中正制를 폐지하고 시험을 보아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당나라도 정권을 세운 후에는 대부분 수나라의 政體를 이어 받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에 中書, 門下와 尙書 三省을 설치하였다. 中書省은 바로 수나라의 내사성에 해당하는데 그 직책은 군대와 국가대사를 관장하고 중요한 관리의 任免과 황제를 위해 詔書(조서)를 기안하는 일을 맡았는데 장관을 中書令이라 하였다. 門下省은 중서성에서 기안한 詔書의 내용을 심의하는데 만약 타당치 못하다고 여길 때에는 그 기안을 취할 수 있었다. 문하성의 장관은 侍中이라고 하였다. 尙書省은 집행기관인데 장관은 尙書令과 左右僕射(좌우복사), 左右丞(좌우증)등이 있었다. 상서성 산하에는 또 吏, 戶, 禮, 兵, 刑, 工 등 6부를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통상 말하는 3성 6부제이다

중앙에는 3성 외에 또 1臺(어사대), 5監(國子, 少府, 將作, 軍器, 都水), 9寺(光祿, 太常, 衛尉, 宗正, 太僕, 大理, 鴻臚, 司農, 太府)등 기구를 두었다.

지방정부는 州와 縣 2급으로 나누었는데 縣 이하의 조직은 名目이 비교적 많았는데 鄉, 里, 保, 隣(4戶가 隣을 이루고, 5隣이 1保, 百戶가 1里, 5리가 1鄉을 구성하였다.) 州縣의 성내에는 坊을 두었고, 성밖에는 村을 두었다. 里正, 坊正, 村正이 戶口

를 검사하고 납세를 관장하였으며 賦役을 파견하였다.<sup>3)</sup>

당나라때의 과거제도도 수나라 때보다 더욱 확대되었고 整備되었다. 당나라의 법률은 大隋律의 기초 위에 보완되었는데 예컨대 유명한 『唐律疏議』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隋唐시기, 특히 당나라때의 정권 조직 형태는 더욱 정비가 잘 되었고 중앙집권제는 진일보 強化되어 봉건사회는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 2) 당나라의 농업

봉건 경제의 번영은 바로 농업 경제의 번영을 말한다. 농업 경제는 봉건 경제의 기초와 根幹이기 때문에 역대의 통치자들은 경제정책을 제정함에 있어서 모두 농업을 첫 자리에 놓았다. 당나라에 이르러 농업정책도 거의 완벽하여 졌는데 대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농업정책중 중요한 것은 前期의 均田法과 租庸調制, 그리고 後期の 莊田制와 兩稅法이 있었다.

均田法은 男丁은 18세가 되면 전답을 1頃(1헥타?)주었는데 그중 2/10는 世業(永業)이고 8/10는 口分이었다. 연로한 남자나 장애인은 전답을 10畝 주었고, 寡婦나 寡妻은 30畝주었는데 만약 그가 호주이면 20畝를 더 주었다. 전답을 배분 받은 사람이 죽으면 世業은 승계를 할 수 있었지만 口分은 관가에 되돌려 재분배하게 하였다.

租庸調法-당나라의 賦役法이다. 租란 매 丁(성년)은 매년 조 2石이나 벼 3石을 세금으로 바쳐야 하고, 調는 지역의 出產品에 따라 누에를 키우는 지역에는 매 丁은 매년 綾, 絹, 施를 각 2丈, 綿 3냥을 상납하여야 하며 누에를 키우지 않는 곳에는 布 2丈5尺, 麻 3斤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 庸이란 매 丁은 매년 20일의 賦役을, 윤월에는 2일을 추가하여 賦役에 나가야 하며 만약 부역에 나가지 아니하려면 매일 絹 3尺이나 또는 布 3尺7寸5分을 代納하여야 하였다. 男丁이 전답을 받은 후에는 租

2) 『隋書』 卷29 『地理志』; 『隋書』 卷46 『楊尙書傳』

3) 『隋書』, 卷28, 『百官志』

와 調를 내야하고 賦役에 종사하여야 하며 성년이 된 다음에는 兵役을 나가야 한다. 국가가 유사시에 20일 외에 추가로 15일 부역에 나가면 調를 면제하였고, 추가로 30일 나가면 租와 調를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 추가된 부역과 본래의 賦役을 합하여 50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약 水災나 旱災, 또는 병충해가 들어 4/10이상 손해가 발생하면 租를 면하고, 6/10이상 손해가 생기면 調를 면제하였으며 7/10이상 損害시에는 모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였다.

당나라 前期 均田법을 시행할 때 세 가지의 토지 점유 형태가 並存하였다. 하나는 지주가 永業田을 차지하는 형태였는데 이러한 형태는 關中지역에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양자강 유역이었으며 제일 적은 것은 關東지역이었다. 두 번째는 均田법에 따라 농민이 토지를 점유하는 형태였는데 그 점유한 토지중에는 20畝의 永業田이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점유는 關東이 제일 많았고, 양자강 유역이 그 다음이었으며 關中지역이 제일 적었다. 세 번째는 땅이 없는 서민들로서 官家의 토지는 얻지 못하고 자체로 10畝나 5畝를 개간하여 작은 농지를 가졌는데 이 점유형태는 지주의 토지점유가 늘어 나고 均田법이 파괴됨으로써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보편적인 형태로 되었다.

지주는 한 곳의 넓은 전답을 점유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곳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었는데 지주가 점유한 한 벌판의 넓은 토지를 하나의 생산단위로 하였는데 이를 하나의 莊이라고 한다. 莊은 또 여러 가지의 別稱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莊田, 田莊, 莊園, 莊宅, 莊院, 山莊, 園, 田園, 田業, 墅, 別墅, 別業등이라 불린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것은 모두 하나의 지주가 소유한 한 개의 농업생산단위였다. 唐莊에 대해 중요시하여야 하는 원인은 당나라 중엽부터 均田법이 폐기되고 莊田은 다시 지주가 토지를 점유하는 주요 형태로 되었기 때문이다.

租庸調法이 발전하여 兩稅法으로 된 것인데, 780년 唐德宗때 양세법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 量出制入(수입과 지출을 제도화하고 계획적으로 한다.) 2) 지주나 소작농을 막론하고 모두 현재 거주한 지역에 따라 호적을 올리고 장정이나 어린애를 막론하고 모두 貧富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 3) 상인들은 所在한 州縣에 세금을 1/30을 내어 정착하여 거주하는 사람들과 세금이 균등하게 하였다. 4) 정착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나누어 세금을 내게 하였는데 여름의 세금은 6월을 넘기지 못하고 가을 세금은 11월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5) 兩稅는 모두 돈으로 납입하게 하였다. 6) 田稅는 唐代宗 大歷 14년(779년)의 田畝數를 기준으로 하였다. 7) 丁額(人頭稅?)을 유보하였다. 8) 租庸調 및 기타 일체 명목의 세금을 폐지하였다. 9) 兩稅 외에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부과하면 違法한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였고 당나라의 농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전국의 전답은 황폐한 곳이 없었다. 서민들의 양곡은 몇 해를 먹을 수 있는 비축이 있었고 국고의 양곡도 저장한 시간이 길어져 썩는 것이 많았다.”<sup>4)</sup>

### 3) 당나라의 상공업

농업이 발달한 기초 위에 수공업도 발달하였는데 당나라의 수공업은 官營과 民營 두 가지가 있었다. 관영 수공업은 규모가 방대하였고 분업이 세분화되었다. 민영 수공업은 주로 도시의 수공업 공장이었다. 당나라의 수공업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絹織業, 陶瓷業, 造船業등이 있었다. 견직업 중의 綾만 보더라도 定州(河北 定縣)의 貢品으로는 細綾, 瑞綾, 兩窠綾, 獨窠綾, 二包綾, 熟線綾등 여섯 가지가 있었다.<sup>5)</sup> 당나라의 窯窯도 매우 많았고 제품도 아주 정교하였는데 예컨대 越窯에서 나는 靑瓷는 陸羽의 『茶經』에서 말하기를 “옥과 같고 얼음과 같다”고 하였다. 陸龜蒙의 시에서 이르기를 “9월의 추풍에 월요가 열리니 천봉우리의 비취색이 빛나네”라고 하였다. 북방의 邢窯(지금의 하북

4) 『元次山集』 卷7 『問進士第三』

5) 『新唐書·地理志』 권39.

성 內邱)의 白蠶는 “은과도 같고 눈과도 같았다.”<sup>6)</sup> 이러한 도자기가 그 당시 전국에 널리 퍼졌는데 소위 말하는 “천하에 賁賤을 안 가리고 모두 이를 사용하였다.”<sup>7)</sup>는 것이다.

농업과 수공업의 발달은 상업의 번영을 가져왔다. 수도인 장안에서부터 시골까지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市”(상업무역구)가 무수히 많았는데 예컨대 兩京市, 州縣市, 萊市, 行市, 墟市, 亥市 등이 있었다. 그 외에 또 “集” “廟會”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당시 동업의 점포들은 조직을 이루어 “行”이라고 하였고 동시에 상품 교역을 진행하는 네트워크도 사통팔달 하여 상당히 발달하였다.

## 2. 당나라의 내륙운송체계 概況

당나라의 내륙운송체계는 육로와 水路 두 가지가 있었다.

### 1) 陸路

당나라의 국내 교통망은 『元和郡縣志』에 每州의 “八到”를 적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주마다 외부로의 통로를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주요한 몇 개만 언급하고자 한다.

#### ① 장안 서북의 주요 路線

上都 서북으로 300리를 가면 汾州에 이르고, 180리를 가면 涇州에 도착하며 330리를 가면 原州, 390리를 가면 會州, 380리를 가면 蘭州, 400리를 가면 鄯州에 이른다. 鄯州에서 동북쪽으로 500리를 가면 涼州에 도착하고 涼州에서 서북쪽으로 500리를 가면 甘州에 이른다. 서쪽으로 400리를 가면 肅州, 480리를 가면 瓜州, 300리를 가면 沙州에 도착하며, 다시 북쪽으로 700리를 가면 伊州에 도착한다. 서북쪽으로 730리를 가면 安西都護府에 도착하여 당나라의 서북변경에 도착한 것이다.

#### ② 장안 서쪽의 주요 路線

장안에서 서쪽으로 310리를 가면 鳳翔에 이르고, 다시 280리를 가면 鳳州에 도착한다. 거기서 450리

를 가면 成州이고, 380리면 武州, 150리면 扶州, 330리면 涪州에 도착한다.

#### ③ 장안 서남의 주요 路線

장안에서 서남쪽으로 760리를 가면 山南西興元府에 이르고, 490리면 利州, 190리면 劍南道劍州, 290리면 綿州, 180리면 漢州, 100리면 成都에 도착한다.

漢州에서 서남으로 75리를 가면 彭州에 도착하고 다시 120리면 蜀州, 80리면 邛州, 서남쪽으로 170리를 가면 雅州, 240리면 黎州, 650리면 喬州, 350리면 姚州에 이른다.

成都에서 서남쪽으로 200리를 가면 眉州, 140리면 嘉州, 320리면 戎州(응주)에 도착한다.

#### ④ 장안에서 동북으로의 주요 路線

장안에서 동북으로 35리를 가면 坊州, 125리면 灤州(록주), 150리면 延州, 400리면 夏州, 서북으로 寧遠鎮을 지나 750리면 天德軍에 도착한다.

장안에서 坊州의 동남쪽을 거쳐 동북쪽으로 250리면 同州, 67리면 河東道河中府에 이른다. 河中府에서 북쪽으로 260리를 가면 降州, 140리면 晉州, 다시 동북으로 360리를 가면 汾州와 忻州(기주)에 도착하고 160리면 代州에 이른다. 대주에서 서북으로 120리면 朔州(삭주)에 도착하여 單于都護府(선우도호부)로 통한다. 대주에서 서북으로 400리면 蔚州(울주)에 이르러 天行軍으로 통한다.

#### ⑤ 장안 동쪽의 주요 路線

장안에서 동쪽으로 180리를 가면 華州, 120리면 潼關(동관), 130리면 虢州(괵주), 435리면 東都(洛陽)에 이른다.

東都에서 동북으로 150리면 河北道懷州, 260리면 衛州, 250리면 濱州(빈주), 110리면 魏州에 도착한다.

東都에서 동쪽으로 280리를 가면 鄭州(정주), 140리면 汴州(변주)에 도착한다.

汴州에서 동쪽으로 240리를 가면 曹州, 370리면 袁州(곤주), 370리면 淄州(치주), 120리면 青州, 350리면 萊州, 240리면 登州에 이른다.

汴州에서 동남쪽으로 330리면 宿州, 420리면 泗

6) 陸羽 『茶經』

7) 李肇 『國史補』卷下.

州, 220리면 楚州, 250리면 揚州에 도착한다. 揚州에서 남쪽으로 70리를 가면 潤州(운주), 170리면 常州, 190리면 蘇州(소주), 370리면 杭州, 130리면 越州, 275리면 明州에 이른다. 항주에서 서북쪽으로 315리를 가면 睦州(목주), 160리면 西州, 260리면 處州, 270리면 溫州에 도착한다. 睦州에서 서쪽으로 280리를 가면 衡州(형주), 700리면 建州, 600리면 福州, 370리면 泉州에 도착한다.

#### ⑥ 장안 동남쪽의 주요 路線

장안에서 동남으로 470리를 가면 商州, 640리면 山南道 鄧州, 180리면 襄州에 도착한다.

襄州에서 남쪽으로 470리면 江陵府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동남쪽으로 570리면 岳州府(악주부), 550리면 潭州(담주), 460리면 衡州, 370리면 彬州(빈주), 410리면 韶州(소주), 530리면 廣州에 도착한다.

襄州에서 江陵에 도착한 후 서남쪽으로 259리를 가면 峽州(협주), 90리면 歸州, 330리면 綾州, 298리면 萬州, 260리면 忠州, 350리면 暗州, 330리면 黔州(검주)에 도착한다.

襄州에서 동남쪽으로 隨州(수주)에 도착한 후 150리면 安州, 290리면 丐州(개주), 7리면 鄂州(악주), 200리면 黃州, 230리면 帶蕪州(대기주), 250리면 江州, 325리면 洪州에 이른다. 洪州에서 서남쪽으로 570리를 가면 吉州, 500리를 가면 虔州(건주), 大瘦嶺(대수령)을 지나 350리면 韶州, 530리면 廣州에 도착한다.

#### 2) 水路

당나라 수로 운송의 번영은 대운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대운하가 형성되기 전에 중국의 수로 운송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水系를 이용하는데 그쳤는데 이러한 수계의 흐름은 대부분이 서쪽에서 동으로 흐르는 하천이었고 남북으로의 수로 운송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서기 605년에서 610년 사이에 수나라가 通濟渠(통제거, 洛陽에서 淮安까지), 山陽瀆(산양독, 회안에서 陽州의 양자강까지), 永濟渠(영제거, 河陰에서 황하를 통해 沁水(심수)에 이르면 북으로 涿郡(탁군)까지 이름), 江南河(鎮江에서 杭州까지)등 4갈래의 서로 연결되는 운하를 완성한 뒤에는 중국 남북의

두 개의 큰 수계인 양자강과 황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므로써 이때로부터 남북방향의 수로 운송도 운하를 통해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당나라에 와서 당나라 정부는 대운하의 침적물이 퇴적되어 막힌 구간에 대해 疏通과 확장 공사를 하였다. 『新唐書·地理志』의 기재에 의하면 刺史 孟簡(맹간)은 수나라의 운하의 기초위에 江南河 구간의 운하에 대해 疏通과 확장 공사를 하였는데 이 공사를 마친 후의 구간을 孟瀆(맹독)이라고 하였다.

通濟渠는 당나라 때에 와서 남북 水運에 있어서의 幹線으로 되었는데 揚州, 益州, 湘南(호남성 남부)에서 交州, 廣州와 북진 중부지역의 모든 官家의 운송물자나 민간의 상인, 旅客들이 모두 통제거를 이용하였다. 『元和郡縣圖志』에서 말하기를 “수나라 때에 비록 힘을 들여 운하를 개통하였으나 이득은 그 후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였다. 당나라 정부의 주요 수입은 양자강과 淮河 流域에서 왔기 때문에 당나라 정부가 통제거에 대해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수나라가 남북 대운하를 완성시킨 후부터 揚州는 남쪽으로는 양자강과 동해를 잇고 북쪽으로는 회하, 장안, 낙양과 연결되며, 서쪽으로는 內陸지역과 연결되는 水陸 교통 요충지와 상품의 集散地로 되어 당시 중국 항해 무역의 4대 항구중의 하나로 되었다는 것이다. 『容齋隨筆』卷5의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때에 鹽鐵轉運使가 양주에 있었는데 判官이 수십 명이나 되었으며 상인들이 구름떼와 같았다. 그리하여 민간에서는 揚州가 제일이고 그 다음은 益州다라는 말이 돌았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로부터도 양주는 당시에 제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唐文宗은 『疾愈德音』에서 양주항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여 외국에서 온 상인들에 대해 “절도사에게 위임하여 늘 무마”하게 함으로써 항해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주항은 해상 실크로드의 여러 외국 상인들이 부상하여 무역을 하는 주요 終點港이었고 또한 신라의 상인들이 南下하여 무역을 하는 주요 終點港이었다. 양주항은 이렇게 되어 황해무역과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중개항으로 되었다. 양

주항에서 출발한 선박은 바로 동해를 가로 건너 일본으로 직항할 수도 있었고, 또한 淮水에서 楚州에 이른후 淮南운하와 濟水를 이용하여 睢州에 도착한 다음 한반도와 일본으로 항해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양자강 입구에서 뱃머리를 돌려 복건성과 광둥성의 연안을 따라 남하한 후 다시 남양 등 광대한 서방 지역으로 원양항해를 할 수도 있었다.

### 3. 당나라의 무역 概況

당나라의 무역중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무역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역이었다. 8세기 중엽 이전까지는 주로 공무역이었고 그 후부터는 사무역이 위주였다.

#### 1) 공무역

공무역이라 함은 정부가 관장하고 주도하는 수출입 무역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은 통상적으로 賜予貿易(사여무역)과 朝貢貿易으로 나뉜다.

“賜予貿易”이라 함은 외국의 사절단이 당나라로 올 때, 당나라 중앙정부에서 외국 사절단에 주는 선물을 말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조공무역”이다. 상품을 선물로 주고받을 때에는 무역이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교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초의 禮節性的인 기증은 국가간의 경제 무역 거래로 이어졌다.

中外 역사 문헌<sup>8)</sup> 및 고고학 발견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나라에서 서방 국가로 수출한 주요 상품은 비단, 도자기, 동, 철, 사향, 大黃 등 물품이고, 서방국가(동남아시아와 남양 등 국가를 포함하여)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주로 香藥(乳香, 蘇木, 龍腦, 胡椒, 沈香), 犀角(서우뿔), 상아, 玳瑁(열대지방의 바다거북. 등껍대기는 장식용품 재료로 쓴다고 함), 진주, 산호, 琥珀(호박), 棉布, 榴璃, 보석, 타조 金銀器 등이 있었다.

『삼국사기』와 기타 자료에 따르면 당나라에서 신라로 수출한 주요 상품은 彩素, 錦彩, 綾彩, 五色

羅彩, 瑞文錦, 絹, 帛 등 絹織物類가 있었고, 錦袍, 紫袍, 綠袍, 紫羅綉袍, 押金線綉羅裙衣, 金帶, 銀帶, 銀細帶, 錦細帶 등 衣類와 金器, 銀器, 金銀細器物, 銀盃 등 금속 공예품이 있었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수출한 주요 물품은 朝霞綢, 朝霞錦, 大花(小花), 魚牙錦, 魚牙綢, 三十升寧衫緞, 龍銷, 布 등 각종 견직물과 금, 은, 동 등 각종 금속류, 그리고 金釵頭, 鷹金(銀)鏤子, 鶴子金(銀)鏤子(鏤은 화살 즉), 鏤鷹鈴, 金花鷹(鶴子)塔鈴子, 金(銀)鏤鷹筆筒, 金銀鏤鶴子筆筒, 瑟瑟細金針筒(슬슬세금침통), 金花銀針筒, 針, 金銀佛像 등 금속공예품류와 인삼, 우황, 茯苓(복령) 등 藥材類, 말, 果下馬, 개, 바다표범피, 擊鷹(鶴子)(매, 독수리?) 등 가죽과 毛皮類가 있었다.

#### 2) 번진의 할거와 사무역의 발전

당나라 중엽에 와서 공무역은 점차 사무역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첫째는 당나라의 번진 반란과 지방할거세력이 강하여 지면서 중앙의 권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고, 당나라의 국제위상도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 다음은 당나라의 지방세력은 자기의 경제실력을 키우기 위해 전과 같이 당나라와 타국과의 사무역을 엄하게 규제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8세기 중엽에 발생한 정치투쟁은 당과 해외 여러 나라와의 무역구조를 개편시켰고 사무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사의 난”후에 당나라 정부에서는 안록산과 사사명의 옛 부하를 달래기 위하여 하북에서의 그들의 세력을 부득이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을 그 지역의 절도사로 봉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李寶臣은 成德절도사로 되어 恒(지금 하북성의 正定), 定(지금 하북성의 定縣) 등 州를 관할하였고, 李懷仙은 盧龍절도사로 되어 函(지금의 북경), 英(지금의 하북 任邱) 등 州를 관장하였다. 田承嗣는 魏博 절도사로 되어 魏(지금의 하북성 大名), 相(하남성 安陽), 博(산둥성 聊城) 등 州를 관할하였다. 이 세 곳을 “하북 三鎮”이라고 하는데 명의 상에서는 당나라의 절도사이지만 실제로는 독

8) 『舊唐書·食貨志』; 『舊唐書·田神功傳』; 韓偉의 『海內外唐代金銀器萃編』(해내의당대금은기체편), 三秦出版社, 1989; 『南海絲綢之路文物圖集』, 제45-57면, 蘇萊曼·丹吉爾의 『中印游記』; 韓愈의 『送鄭和尚書』

립된 할거세력이었다. 그들이 관할하는 구역에는 “자체로 文武 관리를 임명하였고 세금을 징수하였으나 天子도 관계하지 못하였다.”<sup>9)</sup> 안사의 난이 일어난 후부터는 당나라 각 곳에 설치한 절도사들 중의 일부도 “하복 삼진”을 본받아 점차 중앙의 숨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후에 비록 唐 중앙에서는 변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당나라와 변진할거세력간의 투쟁은 끊이지 아니하였다.

막강한 할거세력은 사무역 발전의 온상으로 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첫째, 唐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축소는 변진의 경제력을 높였다. 807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그때 唐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었던 지역은 淮水 이남의 절강성 東西, 宣歙(선흡), 淮南, 江西, 鄂岳, 福建, 湖南등 8道였다.<sup>10)</sup>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역인바, 이로부터도 변진할거세력이 얼마나 강대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렇게 할거해 있는 변진세력은 거의 중앙정부에 납세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의 세무정책을 절도사 마음대로 제정, 시행하였다. 이렇게 할거해 있는 변진들은 자신의 경제실력을 키우고 그 지역의 경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무역을 권장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고 또 세금의 감축은 사무역 상인들이 갈망하였던 바였다.

둘째, 중앙의 명령이 변진지역에서 시행되기 어려웠다. 9세기 중엽의 당나라는 변진이 숲을 이루었고 도처에서 병사를 모집하였다. 사서의 기록을 보면 “큰 변진은 10여개의 州를 관할하였고 작은 변진이라도 3, 4개의 州를 통제하였다.”<sup>11)</sup> 그러한 강대한 변진들은 모두 자기들의 수중에 많은 병사

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sup>12)</sup> “상부에 朝廷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官爵, 군사, 조세, 형벌 등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sup>13)</sup> 그들은 중앙의 법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해 일부 법령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컨대 당나라 정부에서 한때 일부 상품에 대해 거래의 금지를 公布한 법령을 폐지하도록 요구하였다.

『唐律疏議』에서 인용한 『關市令』을 보면 “錦綾, 羅絲, 綢絹, 綿布, 牦牛尾, 珍珠, 금, 은, 철 등은 서부와 북부 여러 邊關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 『冊府元龜』에서는 “建中 元年(780년)에는 칙령을 내려 은, 동, 철 노비 등은 蕃市에서 교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新唐書·食貨志』에는 “貞元 초기, 행인들이 한 푼이라도 돈을 가지고 邊關을 지나는 것을 금지하였다.”라고 하였고, 『舊唐書·憲宗記』에서는 “辛丑(元和 4년 6월)에 돈이 嶺南을 넘는 것을 금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836년, 압신라발해양번사는 조정에 상주하여 신라에서 곧 운송되어 올 熟銅을 금지하지 말도록 요구한 바 있다.<sup>14)</sup>

셋째, 변진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무역은 특히 활발히 진행되었다. 평로치청절도사와 서주절도사가 관할한 지역만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신라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당나라 경내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던가 혹은 연해 운송에 종사하였으며 심지어는 당, 신라, 일본간의 3국 무역에도 종사하였다.

그들의 당나라에서의 상업활동은 지방 할거세력의 묵인 하에 또는 모종의 지지 하에 이루어 졌을 것이다. 이는 이 구역 내에 명목이 繁多한 신라인 居住地로부터도 알 수 있다.<sup>15)</sup>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거세력의 쫓기는 곧 공무

9) 『新唐書』, 卷212, 『李懷仙傳』

10) 『舊唐書』 卷14, 『憲法宗記』

11) 『新唐書』, 卷50.

12) 『舊唐書』 121.

13) 『資治通鑒』 卷225.

14) 『唐會要』, 卷86.

15) 『삼국사기』; 『신당서·신라전』; 『법천문집』; 『엔닌입당구법순례행기』; 『8-9세기 신라와 당 두 나라간의 해상

역 시대가 끝나고 사무역 시대가 도래하였음을豫示하였다.

#### 4. 당나라의 해외 교류에 대한 태도

1) 외국인이 당나라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태도였다.

당나라는 8-9세기때 실제로 동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당연히 많은 외국인들이 당나라로 오게 되었다. 당나라 정부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 여러 계층의 人士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환영하는 태도였다. 아래에서는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였던 것으로부터 당나라가 외국인의 入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안의 鴻臚寺(홍노사)는 당나라 정부에서 각국의 사절단과 賓客을 접대하는 기구였다. 서아시아, 중앙 아세아, 인도지나의 여러 나라와 신라, 일본 등 몇 십개 나라에서 온 사절단은 모두 그 곳에서 접대하였는데 王衷嗣의 『西域圖』나 賈耽의 『海內華夷集』, 『古今郡國縣道四夷述』 등 당나라의 유명한 地理에 관한 책은 모두 저자들이 홍노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간에 외국사절단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들은 그 지역의 風俗에 따라 쓰여진 것이다.<sup>16)</sup>

장안의 西市는 상업구이며 또한 외국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 페르시아, 대식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였는데 여기에 유명한 페르시아 邸와 페르시아 店이 있다.<sup>17)</sup> 이러한 외국 상인들은 商胡 또는 胡客이라 불렀는데 대부분은 보석 장사를 생계로 하였으며 보석을 판별하는 능력들이 있었다.<sup>18)</sup> 그 외 술집과 빵집을 경영하는 점포도 있었다.<sup>19)</sup> 근래에 와서 장안과 낙양에서 페르시아의 은화와 아랍의 금화가

발견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서역의 상인들이 가져온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안의 국립학교인 國子學과 太學에는 고려, 백제, 신라와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다. 장안에는 당시 세계 주요 종교의 전교사가 있었다. 불교를 예로 든다면 중국의 스님(和尚)외에 인도의 高僧도 있었다. 그 외에도 기독교에 속하는 景禰教(경오교), 페르시아의 火禰教(화오교)와 摩尼教(마니교)의 신도가 있었으며 또 이슬람교를 믿는 大食人이 있었다.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 諸國(중앙아시아의 亞母河와 錫爾河 유역의 康, 安, 米, 石, 何, 曹 등 나라)의 예술가들이 장안에서의 활동은 아주 활발하였다. 예컨대 康國의 화가 康隆施(강릉시), 米國의 성악가 米嘉榮(미가영), 曹國의 琵琶胡旋舞와 石國의 胡騰舞(호등무)와 枯枝舞(고지무)가 한때 장안에서 아주 흥행하였다. 安國, 康國, 天竺과 고려의 음악은 당나라의 10대 음악에 속하였다.<sup>20)</sup>

이러한 것들은 만약 당나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외국의 문화를 광범위하게 흡수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장안도 이렇듯 전례 없는 盛況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2) 당나라는 정부차원 혹은 정부에서 허가한 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나라와 나라간의 어떠한 교류도 모두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당나라에 오는 동시에 당나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혹은 정부가 허가한 각종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① 중국-인도-서장(티베트)도로의 개통  
중국과 인도의 교통노선은 여러 갈래가 있었는

활동과 무역에 관한 연구』, 한·중 공동연구과제, 중국측 학자의 중간연구보고서, 1999. 1.

16) 『新唐書』 卷43下, 『地理志』; 卷宗66 『賈耽傳』

17) 『太平廣記』 卷16 『杜子春』條; 『雲笈七籤』 卷113.

18) 段成式 『西陽雜俎』 續集卷5 『寺塔記』 上.

19) 당나라의 詩人중 胡人(서양인)이 경영하는 술집과 胡姬(여 접대부)를 주제로 하는 시가 많았다. 『太平廣記』 卷402 『餅胡』條.

20)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化』



데 당나라 초기의 주요 교통노선은 “釋迦方志” 41권의 소개에 따르면 중요한 세 갈래가 있었다. 북로는 敦煌(돈황)에서 타림분지의 남쪽 변두리를 따라 葱嶺(총령)을 지나고 撒馬爾罕(철마이한)을 경유하여 남쪽에서 鐵門을 지나 吐火羅에 이르면 喀布爾河(개포이하)를 따라 북인도에 이르는 노선이다. 중로는 돈황에서 타림분지의 남쪽 변두리를 따라 총령을 지난 후 昆都土(곤도토)를 경유하여 남쪽에서 북인도에 진입하는 노선인데 이 노선은 또 카슈미르에 이르는 한 갈래의 枝線이 있었다. 東路는 장안에서 청해를 거쳐 吐蕃(티베트), 네팔을 경유하여 中印度에 이르는 노선인데 吐蕃婆羅道라 불렸다. 세 갈래 노선중에 東道가 제일 가까웠는데 이는 당나라 때에 새로 개척한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교통노선으로서 또한 中印藏道(중국-인도-티베트)라고도 하였다. 중인장도는 中印緬(중국-인도-미얀마)道와 雪山의 중간에 있는데 당나라 초기에는 한때 중국과 인도를 오가는 주요 교통 통로였다.

#### ② 王玄策의 세 차례 인도 出使

왕현책이 처음 인도에 使者로 갈 때는 643년 3월인데 먼저 中天竺의 摩揭陀國王(마게타과왕) 屍逸多(시일다)가 두 차례나 당나라에 사자를 파견하여 연락하자 당태종은 朝散大夫 衛尉寺丞 上護軍 李儀(조산대부 위위사승 상호군 이의)를 正使로 하고 融州 黃水縣令(융주 황수현령) 王玄策을 副使로 하는 22인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티베트와 泥婆羅(네팔)를 지나 인도에 도착한 후 같은 해 12월에 마게타국에 도착하였다. 647년에는 왕현책이 두 번째로 인도에 출사하였는데 그 때 왕현책은 正使로 승진하여 蔣師仁(장사인)을 副使로 하여 티베트를 통해 인도에 도착하였다. 왕현책이 세 번째로 인도에 출사한 것은 657년인데 어명을 받고 불교의 袈裟를 인도로 호송하였다.

#### ③ 玄奘(현장)의 인도 방문

중국과 인도 불교 승려들의 상호 방문은 西晉때

로부터 시작하여 끊이지 않았다. 당나라 때에 와서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우는 승려는 52명이나 되었지만 인도의 高僧이 중국에 와서 불교를 전파한 자는 16인밖에 되지 않았다. 불교 經典의 번역은 梵語에 정통한 중국의 고승이 점차 많아져 중국의 승려가 梵語로 된 경전을 직접 번역하였고 불교 이론에 대한 해석도 점차 인도의 고정적인 학설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중국과 인도의 문화교류사에 있어서 당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인도에서 15년간 불교 공부를 한 후 명예롭게 귀국하여 인도 經典 번역에 공헌을 한 현장은 그 중에서 명성을 제일 날린 고승의 하나였다. 그의 이름은 중국과 인도의 문화 교류의 상징으로 되었다.

#### ④ 스리랑카와의 國交 수립

스리랑카를 당나라 때에는 獅子國(사자국) 혹은 僧迦羅(승가라)라 하였다. 杜環(두환)의 『經行記』에서는 아랍인의 칭호에 따라 스리랑카를 新檀(신단) 『錫蘭』(석란)이라 하였다. 670년 스리랑카 국왕 海他達他(해타달타)(664-673)는 使者를 파견하여 당나라와 국교를 맺었다. 그 후 인도에 가서 불법을 공부하는 고승은 바다로 간 경우에는 대부분이 스리랑카에 가서 佛牙를 朝拜(배알?)하고 새로운 經典을 구하고자 하였다.

#### 3) 개인의 출입국에 대한 통제와 무역관리 제도

당나라 정부는 대외 교류에 있어서 비록 외국인이 당나라에 와서 외교활동을 하는데 대하여서는 환영하는 태도였으나 중국인이나 외국인을 물론하고 개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국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일본의 엔닌과 당나라의 鑒貞 和尚이 그 예이다. 그 외 당나라의 대외무역의 상품 품목과 무역에 대한 管理는 본 연구보고서의 당나라 貿易管理 體制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언급하였기에 여기서는 더 중복하지 않는다.

